생활문화센터 대관 심의기준

1) 사용허가의 우선순위

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제8조)

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과천시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.

과천문화재단 대관규정 (제8조)

① 시설의 대관승인은 문화예술활동을 우선으로 하며, 이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가 정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활동
2. 단체와 개인의 경합일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.
3. 단체 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, 공연 및 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한다.
4. 개인 간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공연 및 전시 실적이 많은 신청자가 우선한다.
5.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 대표가 정한다.

② 문화예술활동 이외의 회합 등 기타행사에 대한 대관 여부는 대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갈현생활문화센터 대관운영 지침 (제6조)

① 대관심의는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, 과천문화재단 대관규정 및 센터의 고유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② 생활문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에 한하여 대관이 가능하며, 다음 항목은 제한한다.

- 피트니스(라인댄스, 줌바댄스 등) 중심의 신체활동
- 상업적 강습, 유료회원제 운영, 물품판매를 포함하는 영리적 활동
- 종교·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집회
- 소음, 진동, 혼잡 등으로 타 대관자 및 인근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

※환경부‘소음·진동 관리법’을 근거로,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평균 65db 이상일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‘음악연습방음실2’공간의 경우 밴드 합주 등의 전문 장비가 비치된 공간으로 장비 활용이 없는 신청은 제한할 수 있다.

③ 대관 경합 시, 다음 우선순위를 따른다.

- 센터 또는 재단 주관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
- 과천시 관내 활동 단체 및 주민
- 공공성 있는 협력사업 또는 기관 연계 활동
- 일반 신청자 중 신청내용의 공공성 및 단체 규모가 높은 순

2) 사용의 제한

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(제9조)

1. 생활문화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3.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4. 종교활동,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5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6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생활문화센터 대관 사용변경 및 취소 안내

❍ 사용변경 및 취소 규정

구 분	제 출 서 류
사용일자 또는 사용시간 변경	- 변경신청서
사용공간 변경	- 취소신청서 제출 후 대관신청서 재제출
대관아용 불가한 경우 또는 대관 최소인원 충족이 불가한 경우	- 취소신청서

※ 사용변경은 수시와 상시를 모두 포함하여 월 1회 가능함

※ 사용취소는 신청서 제출 후 번복 불가하며, 재신청 시 대관 가능한 일정이 기존과 상이할 수 있음

- 사용변경·취소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7일 전까지로 함
- 사용변경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, 월 1회를 초과하는 신청 건은 ‘주의’ 조치함 (단, 사용변경 횟수는 이월 불가함)
- 사용취소 신청 후 재신청 시 대관 가능한 일정이 기존과 상이할 수 있으며, 심의는 재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함
- 「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」에 의거하여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·취소한 경우에는 ‘주의’ 조치하며, 사용예정 당일 또는 그 후 취소한 경우에는 ‘경고’ 1회 조치함

❍ 주의 및 경고 조치 기준

구 분	항 목	제한사항
주의	지각	2회 누적 시 경고 1회로 전환
	월 1회 초과 변경	2회 누적 시 경고 1회로 전환
	준수사항 미준수	2회 누적 시 경고 1회로 전환
경고	대관시설 미이용 1회	1회 누적 시 페널티 및 대관 준수사항 재안내
	대관시설 미이용 2회	2회 누적 시 페널티 및 대관 준수사항 재안내
	대관시설 미이용 3회	3회 누적 시 누적 당일로부터 3달간 대관제한
제한	대관권 양도·판매	적발 즉시 3달간 대관제한
	신청서 허위 기재	적발 즉시 3달간 대관제한
	종교·정치·영리 목적의 사용	적발 즉시 3달간 대관제한

※ 입원, 사고, 재난 등의 이유로 대관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음

※ 사전연락(고지)한 대관 이용자의 지각의 경우, 구두로 '주의' 조치하며 이는 누적되지 않음

- 음식물 섭취, 정리정돈 미비 등은 '주의' 1회 및 준수사항 재안내
- 대관권 양도·판매, 신청서 허위기재, 종교·정치·영리 목적 이용 등은 적발 즉시 퇴실 조치 및 적발일 기준 향후 3개월간 대관신청 불가함
- 시설물 및 기기 파손·분실 등은 즉시 퇴실 조치 및 대관자가 변상함
- 사전연락 없이 입실시간 미준수 시 '주의' 조치하며, 입실시간은 대관 시작시간 기준으로 1시간 이내까지로 함